

안산시중소기업기술개발자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682
----------	-----

제출년월일 : 1998. 9.
제출자 : 안산시장

□ 개정이유

- 우리지역에 소재하는 중소기업이 생산현장에서 겪고있는 기술적인 애로사항을 스스로 해결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기업 경쟁력을 제고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하여 조성된 중소기업기술개발위원회에 실무소위원회를 설치·운영하여 위원회의 전문성과 공정성을 확보함으로써 기술개발자금을 보다 효율적으로 관리하고자 함

□ 주요개정내용

- 안산시중소기업기술개발위원회 위원정수 증원(안 제7조)
 - 위원회 위원을 기술개발 경험이 풍부한 학계, 연구원, 관계공무원 등 10인 이내로 구성토록 되어 있으나,
 - 앞으로는 동 위원을 기술개발 경험이 풍부한 학계, 연구원, 기업체 연구소장, 관계공무원등 15인 이내로 위원회를 확대 구성하여
- 실무위원회 운영(안 제7조의2)
 - 위원회의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각 분야별로 실무위원회를 설치·운영하여 사업금액과 사업기간을 전문분야별로 공정하게 심의토록 함.

□ 참고사항

-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제15조

○ 예산 수반사항 : 750,000원

- 안산시중소기업기술개발위원회 위원정수 증원과 실무위원회 위원
실비변상

$$- 5인 \times 3회 \times 50,000원 = 750,000원$$

○ 관련사업계획서 : 해당사항 없음

○ 조례제정 사전절차

- 조례안 입법예고 : '98. 6. 22. ~ 7. 13.

안산시중소기업기술개발자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제7조제2항중 “10인”을 “15인”으로 하며, 동조제4항제1호중 “1인”을 “3인”으로, 동조동항제2호중 “3인”을 “5인”으로, 동조동항제3호중 “시의회산업위원회”를 “안산시의회”로, 제4호중 “2인”을 “3인”으로 한다.

제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조의2(실무위원회) ①위원회의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자문사항에 따라 각 분야별로 실무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②실무위원회는 위원장이 지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심의자문하고, 그 결과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실무위원회는 위원회위원의 전문분야를 고려하여 위원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하여 구성한다.

④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의 부위원장이 된다.

⑤제7조제8항 규정은 실무위원회에 이를 준용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7조(위원회설치 및 운영) ① (생략)</p> <p>②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1인을 포함한 <u>10인</u>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p> <p>③ (생략)</p> <p>④위원은 다음 각호의 자로 하되 시장이 임명또는 위촉한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1. 연구원 <u>1인</u> 2. 대학교수 <u>3인</u> 3. <u>시의회 산업위원회</u> 의원 1인 4. 기업체 연구소장 <u>2인</u> 5. (생략) <p>⑤~⑧ (생략)</p> <p style="text-align: center;">(신 설)</p>	<p>제7조(위원회 설치 및 운영) ① (현행과 같음)</p> <p>②----- ----- <u>15인</u> -----</p> <p>③ (현행과 같음)</p> <p>④----- ----- ----- 1. - - - - <u>3인</u> 2. - - - - <u>5인</u> 3. <u>안산시의회</u> 의원1인 4. - - - - <u>3인</u> 5. (현행과 같음)</p> <p>⑤~⑧ (현행과 같음)</p> <p><u>제7조의2(실무위원회) ①위원회의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자문사항에 따라 각 분야별로 실무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u></p> <p><u>②실무위원회는 위원장이 지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심의자문하고, 그 결과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u></p> <p><u>③실무위원회는 위원회위원의 전문분야를 고려하여 위원증에서 위원장이 지명하여 구성한다.</u></p> <p><u>④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의 부위원장이 된다.</u></p> <p><u>⑤제7조제8항 규정은 실무위원회에 이를 준용한다.</u></p>

第10編 地方制度 第2章 地方自治 地方自治法

第12條 (住民의 資格) 地方自治團體의 區域안에 住所를 가진 者는 그 地方自治團體의 住民이 된다.

第13條 (住民의 權利) ①住民은 法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속地方自治團體의 財產과 公共施設을 이용할 權利와 그 地方自治團體로부터 平等하게 行政의 惠澤을 받을 權利를 가진다.

②國民인 住民은 法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地方自治團體에서 실시하는 地方議會議員 및 地方自治團體의 長의 選舉(이하 “地方選舉”라 한다)에 참여할 權利를 가진다.

第13條의2 (住民投票) ①地方自治團體의 長은 地方自治團體의 廢置·分合 또는 住民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거나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地方自治團體의 주요 결정사항등에 대하여 住民投票에 불일 수 있다.

②住民投票의 대상·發議者·發議要件·기타 投票節次등에 관하여는 따로 法律로 정한다.

(本條新設 94·3·16)

第14條 (住民의 義務) 住民은 法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소속地方自治團體의 費用을 分擔하는 義務를 진다.

第3章 條例와 規則

第15條 (條例) 地方自治團體는 法令의 범위안에서 그 事務에 관하여 條例를 制定할 수 있다. 다만, 住民의 權利制限 또는 義務賦課에 관한 사항이나 罰則을 정할 때에는 法律의 委任이 있어야 한다.

第16條 (規則) 地方自治團體의 長은 法令 또는 條例가 委任한 범위안에서 그 權限에 속하는 事務에 관하여 規則을 制定할 수 있다.

第17條 (條例와 規則의 立法限界) 市·郡 및 自治區의 條例나 規則은 市·道의 條例나 規則에 위반하여서는 아니된다.

第18條 (地方自治團體의 新設, 格의 變更時의 條例·規則의 施行) 地方自治團體가 分合하여 새로운 地方自治團體가 設置되거나 地方自治團體의 格이 變更된 때에는 당해 地方自治團體의 長은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새로운 條例 또는 規則이 制定·施行될 때까지 종래 그 地域에 施行되던 條例 또는 規則을 계속 施行할 수 있다.

안산시중소기업기술개발자금관리조례증개정조례안에대한수정안

의안 번호	682
----------	-----

제출년월일 : '98. 9. 19.

제출자 : 보사·환경위원회
이하연위원장외6인

1. 수정이유

- 중소기업기술개발위원회의 위원을 기술개발 경험이 풍부한 기술개발전문가중에서 임명 또는 위촉하도록 하여 위원 위촉 임명의 탄력성을 부여하고 위원회의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 할 수 있도록 하고자함.

2. 수정주요골자

- 제7조 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함.
④위원은 기술관련 전문가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안산시중소기업기술개발자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한수정안

안산시중소기업기술개발자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중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제7조제4항을 다음과 같이한다.

- ④ 위원은 기술관련 전문가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수정안 대비표

원 안	수 정 안
제7조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①(생략)	제7조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①(원안과 같음)
②~③(생략)	②~③(원안과 같음)
④ 위원은 <u>다음 각호의 자로 하되</u> 시장 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④..... <u>기술관련 전문가중에서</u>
1. 연구원 3인	1~5<삭제>
2. 대학교수 5인	
3. 안산시의회 의원 2인	
4. 기업체 연구소장 2인	
5. 기타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자	
⑤~⑧(생략)	⑤~⑧(현행과 같음)